사회맞춤형교육운영규정 5-1-52

규정번호 5-1-52
제정일자 2019.11.25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산학AI융합지원센터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의 사회맞춤형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이란 대학과 산업체가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고, 졸업 후 해당 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사회맞춤형 교육운영에 한하여 적용한다.

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,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폐지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는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 라 한다)에 의한다.(개정 2021.07.22.)

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운영학과의 학과장을 포함한 전임교원과 산업체인사 중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1.07.22.)

③ 산학협력처장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관장하고, 회의의 의장이 된다.(개정 2021.07.22.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1. <삭제(2024.7.24.)>
2.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연구개발
3.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4. 기타 사회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제5조(교육과정의 편성) ①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은 단일 학과 또는 복수의 학과로 편성할 수 있다.

②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산학협력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

다. 산학협력처장은 관련 부서의 검토 후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정을 확정한다.(개정 2021.07.22.)

③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07.22.)

1. 교육과정의 명칭
2. 참여학과 및 운영 계획
3. 정원 및 선발 방법
4. 교육과정의 운영기간
5. 기타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산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) ① <삭제(2024.7.24.)>

②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채용예정약정 인원 또는 채용 우대를 포함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(개정 2021.07.22.)

③ 협약은 대학과 산업체간의 상호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,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해야 한다.

④ 협약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1개월 이전에 체결하며, 산업체에서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
2. 강사 및 겸임교원 추천
3. 현장실무 특강
4. 현장학습 지원
5. 기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폐지) 사회맞춤형 교육 과정은 산업체의 수요, 지원 상황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.

제3장 교육운영 과정

제8조(교육과정 및 이수)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및 이수는 학칙 및 학사내규를 따른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과정의 운영) ①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과 주관으로 이루어지며, 복수의 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 학과를 선정한다. 해당 학과의 학과장이 운영 책임자가 된다.

② 운영 학과에서는 학기 개시일 이전에 학생선발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③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학과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자를 선정하여 산학협력처에

제출한다.(개정 2021.07.22.,2024.7.24)

제10조(학사관리)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수업 및 성적 등의 학사관리 사항은 학칙, 학사내규 및 제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준수사항) ①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산업체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②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참여 산업체는 원활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4항, 제4조제5항제1호, 제6조제1항, 제9조제2항·제3항)